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거짓 112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52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5. 11. 14.

3. 회 부 일 : 2025. 11. 1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거짓신고로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 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 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거짓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거짓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112에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거짓신고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④ (생 략)	제18조(과태료) ① ----------2천만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1)]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법령에 따른 거짓신고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 - 시행령 [별표]	200	400	500

경찰청에 따르면 112 거짓신고 발생 건수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155건, 2024년 5,43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최근 5년간 112 거짓신고 발생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거짓신고 건수	4,153	4,235	5,155	5,432	2,959

※ 자료: 경찰청

이러한 점에서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4배 상향하여 거짓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과태료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4배 인상하는 것은 조정 폭이 상당하므로, 그 실효성 및 유사 법령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먼저, 거짓신고에 대해 이미 여러 제재수단이 병존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현행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외에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 다양한 형사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거짓신고의 위법성 수준과 발생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 법률상의 거짓신고 관련 제재 규정]

법률	규 정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태료 상한 인상만으로 억제 효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가 요구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12 거짓신고 중 과태료가 실제 부과된 비율은 4%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다수의 사건이 형사입건 또는 경범죄 즉결심판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2024년 이후에도 과태료 처분 건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이는 경범죄의 경우 현장 경찰관이 통고처분[2]을 통해 즉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반면,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부과위원회 심의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임.

[112 거짓신고 처벌 현황]

구 분	거짓신고 (건)	처벌 유형			소계 (건)	제재율 (%)
		형사입건 (건)	경범죄처벌법 (건)	과태료 (건)		
2020년	4,063	954	2,579	-	3,533	87.0
2021년	4,153	954	2,803	-	3,757	90.5
2022년	4,235	990	2,956	-	3,946	93.2
2023년	5,155	1,438	3,435	-	4,873	94.5
2024년	5,432	1,256	3,617	219	5,092	93.7
2025년 10월	4,468	844	3,092	162	4,098	91.7

※자료: 경찰청

2)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는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며, 기한 내 범칙금이 납부되면 위반자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지만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에 회부됨.

아울러, 유사 법령과의 형평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 상한 설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인 「과태료금액 지침」[3]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제처는 위반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관한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범위를 1,0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소방기본법」제56조제1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유사 분야에서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모두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유사 법률상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비교]

법률	위반행위	과태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	500만원
소방기본법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500만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500만원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3) 법제처, 과태료금액 지침, 2019.

[행정상 명령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 설정(예시)]

등급	금액범위	내 용
A 등급 (상위등급)	1천 이상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커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 ▪ 위반행위자가 대기업, 대규모유통업자 등으로서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B 등급 (중위등급)	1천 미만 3백 이상	▪ 위반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경우 ▪ 국토, 환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법위반상태의 제거 내지는 위반상태 전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C 등급 (하위등급)	3백 미만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 가능성이 낮은 단순 위반행위로서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정이 가능한 위반행위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동물소유자 등 개인이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명령인 경우

※자료: 법제처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다중운집시설에 대한 거짓 폭발물 신고 등 악의적·상습적 거짓신고가 치안 공백을 초래하고 공무집행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 민사상 손해배상보다 과태료가 더 신속하고 실효적인 제재수단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수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	법제처, 과태료금액 지침 "붙임1(행위유형별 분석자료) 발췌"

유형 4 **행정상 명령**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受忍) 의무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

- 유형: 이행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조치명령, 보완명령

▷ 상한액 분포 및 특성

상 한 액		1백 이하	2백	3백	5백	1천	1천 초과	합계
행위 수	현 행	64	29	67	81	92	68	401
	2000년 이후	46	20	43	59	82	33	283

- **(특성)** 개인정보, 안전, 외국환 등 관련 명령의 경우 1천만원 이상, 경미한 시설개선명령, 원상회복, 장애물 제거 등에 관한 명령의 경우 2백만원 이하로 규정

▷ 고려요소

- **(명령의 종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이행명령이나 시정·조치명령의 경우 일반적인 감독상 명령이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명령보다 높게 설정
- **(명령의 내용)** 국민의 권리 침해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명령인지, 환경보전 등 공익상의 필요를 위한 명령인지, 피감독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인지를 고려하여 설정
- **(명령권자)** 국가(중앙행정기관의 장)인지, 시·도지사인지, 시·군·구청장인지를 고려하여 설정

▷ 상한액 설정예시

등급	금액범위	내 용
A 등급 (상위등급)	1천 이상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커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행위 ▪ 위반행위자가 대기업, 대규모유통업자 등으로서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B 등급 (중위등급)	1천 미만 3백 이상	▪ <u>위반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경우</u> ▪ 국토, 환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법위반상태의 제거 내지는 위반상태 전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C 등급 (하위등급)	3백 미만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침해 가능성이 낮은 단순 위반행위로서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정이 가능한 위반행위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동물소유자 등 개인이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명령인 경우